

수 신 약제부서장

제 목 2020년도 한국병원약사회 정회원 신상신고 및 회비 납부 요청

1.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. 금년도 본회 정회원 신상신고 및 회비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3. 본회 정관 제6조에 의거, ‘정회원’은 ‘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’를 말합니다. 따라서, 정회원 신상신고를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회원 신상신고를 먼저 완료하여야 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4. 회원신상신고(이하 회원신고)는 본회 홈페이지(www.kshp.or.kr)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받고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회원신고는 각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등록해 주셔야 하며, 프로그램상 최초 회원신고를 하시는 분이 소속 병원의 ‘회원신고 담당자’로 등록됩니다. 따라서, 병원의 약무담당자 등이 대표로 최초 회원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, 이 때 최초 등록된 ‘회원신고 담당자’만 신고 내용을 수정 및 확인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별도로 ‘교육확인 담당자’를 두어 등록된 ‘회원신고 담당자’와 ‘교육확인 담당자’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‘마이페이지’에서 병원별 교육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신고 방법은 붙임의 <2020년도 회원신상신고 가이드>를 참고하시거나, 본회 홈페이지 회원신고 페이지의 <회원신고 방법>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5.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, 동법 제24조 제1항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해 주셔야 2020년도 신상신고가 완료됩니다. 개인정보 관련 동의 방법은 회원신고 시 온라인 동의서 양식에서 동의 여부를 표기하거나, 본 공문 붙임으로 첨부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회원 수만큼 복사하시어 각자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방법 중 편리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각 병원 회원신고 담당자께서는 회원신고 시 소속 병원의 회원들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---- 다 음 -----

(1) 본회 정회원 신상신고

가. 회비 금액 : 90,000원(사회봉사기금 9,000원 포함)

나. 회원신고 : 본회 홈페이지(www.kshp.or.kr) 통하여 온라인 신고(3/2(월) 부터 가능)

다. 회비 납부처 : 신한은행 140-012-920943 (사)한국병원약사회

라. 회비 납부기한 : 2020. 3. 27(금)

마. 협조사항 : 온라인 송금시 송금인을 **병원명**으로 해주시기 바라며,
회비 납부기한 이후에는 신고자 성명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신상신고 회비는 **환불이 불가**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고
신상신고 하시기 바랍니다.

(2) 문의 : 본회 사무국 신상신고 담당자

(Tel : 02-583-0887 /E-Mail : kshp21@korea.com)

붙임 : 1. 2020년도 회원신상신고 가이드
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 1부. 끝.

(사) 한국 병원 약 사회



수신자

담당자	오지영 대리	과장 윤준호	부장 조용준	사무국장 손현아
문서번호	병약 2020-134호	(2020.02.25.화)	홈페이지	http://www.kshp.or.kr
우 06725	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42	갑목빌딩 7층	전자우편	kshp21@korea.com
전화번호	02-583-0887	직통 02-583-8801	팩스번호	02-521-5629 / 공개